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응시자격 안내

본 자료는 응시자격의 사전진단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인증팀

031-780-2107, certification@kidp.or.kr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응시자격이 궁금해요!

Q1.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응시자격을 알려주세요.

A.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아래 사항 중 1가지에 해당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Q2.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A.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 중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 자격은 인정 불가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 목록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 중 기능사 등급의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 자격은 인정 불가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 목록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화·예술·디자인·방송’과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경력증빙에 대한 안내는 16페이지 Q8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7페이지 Q4-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자격취득확인서와 경력증빙서류입니다.

사례

1.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뒤,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정보처리기사가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며, 서비스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해당 경력이 1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2. UX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뒤,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경우

응시불가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의 취득일 이후부터의 실무 종사 기간이 1년이어야 하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3. 웹디자인기능사를 취득한 뒤, UX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웹디자인기능사가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며, UX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UX' 또는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4. 시각디자인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UX디자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가능

시각디자인산업기사가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며, UX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통해 해당 경력 2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Q3.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A.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 중 ‘문화·예술·디자인·방송’분야의 기사, 기술자 자격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 기술사 등이 속하며 자세한 목록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 중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분야의 기사, 기술자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건축기사 등이 여기에 속하며 자세한 목록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7페이지 Q4-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자격취득확인서입니다.

사례

1. 컬러리스트기사를 취득한 경우

응시가능

컬러리스트기사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2.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경우

응시불가

정보처리기사는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이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Q4.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A. **관련학과**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 및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의 전공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학과 목록은 **[별첨2]**와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관련학과 여부에 대한 심사는 졸업증명서 등 서류상에 기재된 정확한 학과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은 인정 가능하며, 부전공은 인정 불가합니다. 석사학위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석사학위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자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사학위 과정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106학점(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된 경우)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석사학위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학과 목록에 학과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지정신청에 대한 안내는 17페이지 Q9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입니다.

Q4-1. 대학원 학위 취득도 인정되나요?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A.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응시종목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속하는 석사·박사과정 대학원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란 ‘문화·예술·디자인·방송’과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를 말합니다. 전공명을 기준으로 하며, 대학원 논문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력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이수자**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대학원 이수예정자**란 전 과정의 1/2을 초과하여 이수중인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이수한 기간만큼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대학원 이수기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학위취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위증빙은 Apostille발급 및 번역공증서류 또는 주한영국문화원 및 공자아카데미 등에서 발급한 서류로 심사합니다. **해외 증빙은 발급기간이 2주 가량 소요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Q4-2. 해외학위취득자도 응시자격이 부여되나요?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A. **해외학위취득자**의 경우 국내법 상에 명기되어있지 않으므로, 관련학과에 해당하도록 관련학과 지정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17페이지 Q9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위증빙의 경우 Apostille발급문서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주한공식기관(주한영국문화원 또는 공자아카데미)에서 발급한 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외 증빙은 발급기간이 2주 가량 소요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2)

1. '제품디자인학' 전공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학과'에 '제품디자인학'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2. '시각정보디자인공학' 전공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불가: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통해 별도 자격 부여 심사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학과'에 '시각정보디자인공학'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각정보디자인학'이 명기되어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전공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통해 관련학과 인정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해외에서 'Design' 전공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불가: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통해 별도 자격 부여 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국내 전공명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통해 관련학과 인정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서비스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학과'란 2,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에 대한 규정이므로 석사학위 취득만으로 '관련학과 졸업자 등'의 응시자격으로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석사학위의 경우 일정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2)

5. '시각디자인학' 전공명으로 4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응시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학과'에 '시각디자인학'이 명기되어 있고, 최종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6. '시각디자인학' 전공명으로 3학년을 수료한 경우

응시불가

최종학년 재학생부터 응시자격이 규정하는 졸업예정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3학년 수료상태는 응시자격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7. 학점은행제로 '제품디자인' 학사학위 과정의 110학점을 취득한 경우

응시가능

학점은행제로 106학점(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된 경우)을 인정받은 경우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Q5.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A.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이란 3년제 학위과정을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이란 2년제 학위과정을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사학위 과정의 1/2 이상을 마친 사람도 해당합니다.

관련학과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 및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의 전공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학과 목록은 **[별첨2]**와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관련학과 여부에 대한 심사는 졸업증명서 등 서류상에 기재된 정확한 학과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은 인정 가능하며, 부전공은 인정 불가합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화·예술·디자인·방송’과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경력증빙**에 대한 안내는 16페이지 Q8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7페이지 Q4-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경력증빙서류입니다.

사례

1. '제품디자인학' 전공명으로 학사학위 과정 1/2을 이수하고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학과'에 '제품디자인학'이 명기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사학위 과정의 1/2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 인정되므로, 관련학과 졸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각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해당 경력이 2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Q6.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A.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화·예술·디자인·방송’과 ‘건설’,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11의 2). 경력증빙에 대한 안내는 16페이지 Q8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7페이지 Q4-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경력증빙서류입니다.

사례 (1/2)

1.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서비스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해당 경력이 4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2. 디자인 관련 업무(시각, 제품, 서비스 등)를 다양하게 수행하며, 여러 업체 소속 경력을 합산해서 4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은 업무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므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경력의 총합이 4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된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서비스디자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디자인 관련 업무(시각, 제품, 서비스 등)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서비스디자인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석사학위는 2년의 실무기간으로 인정이 가능(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합니다. 또한 해당 경력이 2년 이상이므로 총 4년 이상의 실무기간을 인정받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4. IT설계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불가

IT설계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속하고, 해당 경력이 4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디자인'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사례 (2/2)

5. UI (또는 UX나 CX)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가능 (단, 경력증빙이 모두 가능한 경우)

‘문화·예술·디자인·방송’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속하지는 않으나, 본 자격검정 범위 특성상 전문위원회의 별도 의결에 따라 ‘UI’, ‘UX’, ‘CX’ 분야 경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의 4년 이상이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빙 서류에 수행업무내용으로 ‘UI’, ‘UX’, ‘CX’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6.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경력증빙이 모두 가능한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경우 응시자의 이름과 용역기간이 명기된 용역계약서 또는 용역수행업무가 기록된 디자이너 경력증명서(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발급)를 통해 실무기간을 인정하며, 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Q7. 아래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A.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술훈련과정**은 3-4페이지 Q2와 Q3의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문의하시고자 하는 기술훈련과정명을 명기하여 certification@kidp.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격명과 발급기관, 발급국가를 명기하여 certification@kidp.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빙**의 경우 Apostille발급문서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주한해외기관(주한영국문화원 또는 공자아카데미 등)에서 발급한 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외 증빙은 발급기간이 2주 가량 소요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Q8. 경력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A. 아래 서류로 경력증빙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www.deisngcareer.kodfa.org)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접수 후 서류검토까지 2주가 소요되며, 수정 시일까지 고려하여 원활한 응시자격서류 제출을 위하여 **사전신고**를 권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 [참고1]

- 디자인분야와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①재직기간, ②소속 및 직위, ③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업체 소속경력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담당업무내용에 ‘디자인’, ‘UI’, ‘UX’, ‘CX’ 및 ‘문화’, ‘예술’, ‘방송’, ‘건설’, ‘섬유’, ‘의복’, ‘목재’, ‘가구’, ‘공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로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등은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력사항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문서 및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도 인정하나 근무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 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13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Q9. 관련학과 지정신청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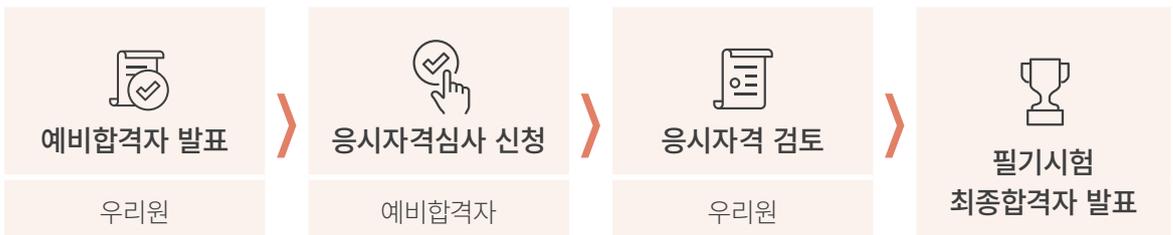
- A.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학과(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고시 내 학과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상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 지정 신청을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별첨4]** 서식을 활용하여 당회 시험 접수 마감 3일 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총장 또는 학장 이상의 직인 날인)와 해당학과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송부하여 신청하는 학과에 대하여 우리원 사전검토 후 관련학과 승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관련학과 지정 여부는 학과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해당 교과과정표(커리큘럼) 유사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시험접수 마감일 이전 해당학과 승인된 학과에 한하여 관련학과로 인정합니다.

Q10. 응시자격심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A. 필기시험 가채점 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예비합격자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심사 신청서류와 함께 증빙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을 심사합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예비합격자가 당회 응시자격심사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합격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별첨

- 별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인정 자격 목록
 - 별첨 2.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학과(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고시
 - 별첨 3. 관련학과 지정승인 목록
 - 별첨 4. 관련학과 지정신청서
 - 참고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인증팀
031-780-2107, certification@kidp.or.kr
